농림축산식품부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30일 브리핑 시(11시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 이동식(044-201-2511), 서기관 유재형(2515)
구제역방역과장 정재환(044-201-2531), 사무관 이용진(2537), 조동호(2532)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홍기성(044-201-2551), 사무관 김석재(2555)
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김지수(044-201-7491), 사무관 김원빈(7492) / 제공일: 9월 30일(총 9매)



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

- 특별방역대책기간('21.10~'22.2월),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**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** 운영 및 **방역관리 강화**

□ **(아프리카돼지열병)** ①집중포획·울타리 설치로 **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**하고 ②**농장 차단방역 강화** 및 ③**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**

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,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

②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,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

③ 발생·인근지역 권역화,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

□ **(조류인플루엔자)** ①철새도래지 등 **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**하고, ②**농장·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** 및 ③**관리체계 개선**

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,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

②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,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 강화

③ 위기경보단계·검사체계 개선, 2주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

□ **(구제역)** ①**백신 일제접종·항체검사,** ②돼지 위탁·임대농장 등 **취약분야 점검강화** 및 ③**소·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**(4개월) 추진

① 소·염소 일제접종(10월)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(9월),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 실시

② 돼지 위탁·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,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점검

③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'21.11~'22.2월, 소·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

◈ **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**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**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"농식품부")는 올해 **10월부터 내년 2월까지**(5개월)**를 특별방역대책기간**으로 정하고, **가축전염병 방역 관리**를 **강화**한다고 밝혔다.

* 「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」 수립,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

1.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진단

□ **아프리카돼지열병**(이하 ASF)은 **'19.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** 이후 **총 20건이 발생**하였고, **야생멧돼지 ASF**는 경기·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**17개 시군에서 총 1,636건**(9.29 기준)**이 검출되었다.**

○ **멧돼지 ASF 검출지역**은 **경기북부**에서 **강원북부**를 거쳐 **강원 중부까지 확산**되었고, 최근에는 **울타리 밖인 홍천·평창·정선 등**에서도 검출되었다.

○ 다수의 농장이 **검출지역 주변에 위치***해 있고, **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** 등으로 **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**이다.

*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 256호(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%)

□ **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**(이하 AI)는, **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**(1~8월, 전년 대비 유럽 40배, 아시아 3배 증가)하면서 **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**이다.



□ **구제역**은 **'19.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, 주변국**(중국·몽골 등)**에서 지속 발생***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.

* ('21.1.1~8.31) 중국·몽골 등 주변국 포함하여 11개국 104건 발생

2.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대책

□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,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.

1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

기 존	개 선
■ **(울타리)** 광역·2차 울타리 설치·관리 ■ **(지역관리)** 강원·경기북부 중점 관리	■ **(울타리)** 강원 중남부 울타리 추가설치 ■ **(지역관리)** 강원중부까지 관리지역 확대, 강원남부 멧돼지 서식밀도 낮춰 남하 차단

□ **(긴급조치)**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**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**(임시차단망·경광등·기피제·포획도구 설치)**를 실시**하고,

○ **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**으로 **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**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.

□ **(울타리) 강원 중·남부**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**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***하고, 기존 울타리의 **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·보강**할 계획이다.

* 강원 중·남부 3개 노선: ①홍천~원주(광역), ②정선~영월(광역), ③평창~횡성~홍천(2차)

□ **(집중포획)**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**겨울철**(11~4월) **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**하고,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(클린존)에 **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**하여 **남하를 차단**한다.

2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

기 존	개 선
■ **(방역시설)** 접경지역 농장 방역시설 강화	■ **(방역시설)** 접경 이남지역까지 확대 추진
■ **(실태점검)**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	■ **(실태점검)** 실태점검에 더해 지자체 전담관 지정 및 위험농장 심층 컨설팅
■ **(방역관리)** 기본수칙 중심 홍보	■ **(방역관리)** 발생농장 미흡사례 활용 홍보

□ **(방역시설 강화)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**을 위해 **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*** **설치**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**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****한다.

* ①외부울타리, ②내부울타리, ③방역실 ④전실, ⑤입·출하대, ⑥방조·방충망, ⑦폐사체 보관시설, ⑧물품반입시설

** 접경지역 18개 시군(완료) → 경기남부·충북북부·경북북부 → 중부 → 남부

□ **(방역실태 점검)**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(256호)을 대상으로 **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**을 실시하고 있고, 전국 양돈농장(6천여호)의 **방역실태를 점검**(5차 점검)하고 있다.

□ **(방역관리)** 돈사 내에 사람·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**모돈사**(母豚舍)**에 대한 관리방안**과 **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**할 계획이다.

3 오염지역 확산 차단

기 존	개 선
■ **(권역화)** 경기·강원을 4개 권역화 관리 (돼지·분뇨 및 차량의 권역간 이동 통제)	■ **(권역화)** 충북·경북북부 추가 6개 권역화, 권역간 돼지·분뇨 이동통제
■ **(전파차단)** 소독시설·통제초소 운영	■ **(전파차단)** 소독시설·초소 중점 점검, 위험지역 입산 및 풀사료 반입 금지

□ **(권역화)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**를 위해 '19.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**6대 권역으로 확대**하여 **권역 밖으로의 돼지·분뇨의 이동 통제**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.

* 6개 권역화: ①경기북부, ②강원북부, ③경기남부, ④강원남부, ⑤충북북부, ⑥경북북부

□ **(소독)** 검출지역 **하천 주변**과 **인근 도로·농장을 집중 소독**(주 5회)하고, 사람·차량 소독을 위한 **거점소독시설**(169개소) **및 통제초소**(99개소)**에 대한 점검을 강화**한다.

3. 조류인플루엔자(AI) 방역대책

□ **오염원을 조기에 발견·통제·소독**하고, **농장·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** 및 **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**을 추진한다.

1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

기 존	개 선
■ **(예찰)** 철새도래지 103개소 예찰	■ **(예찰)** 109개소 + 소하천·저수지·농경지,
■ **(통제)** 철새도래지 234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권고	■ **(통제)** 260개 지점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,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

□ **(조기발견) 오염원의 국내유입**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**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**(103개소→109)하고,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**농장 주변 소하천·저수지·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**한다.

□ **(차량·사람 통제)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**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**올겨울부터는 의무 시행**('21.10.14~)**으로 전환**한다.

□ **(소독) 오염원 제거**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**철새도래지 인근 도로**와 **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**한다.

2 농장 · 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

기 존	개 선
■ **(자율방역)** 우수미흡농가 차별화 미흡	■ **(자율방역)** 우수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
■ **(점검·보완)** 미흡농가 과태료 부과	■ **(점검·보완)** 미보완시 사육제한
■ **(취약요인)**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오리 사육제한(희망농가) 및 전통시장 관리	■ **(취약요인)** AI 발생 우려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

□ **(자율방역)**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**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**하는 **질병관리등급제**를 시범 운용하여 **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**할 계획이다.

□ **(점검·보완)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**을 **지정**(4,178명), **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**를 추진한다.

○ 사전 점검결과 **소독·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**(1,057호)을 집중 관리하고, **주요 방역시설**(출입구 소독시설, 전실 등)**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**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○ **도축장·사료공장 등 축산시설***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**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**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* 도축장, 사료공장, 식용란 선별포장업, 분뇨·비료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

□ **(취약 축종·시설) 오리*** **겨울철**(11~2월) **사육제한**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**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**으로 개선하고, 토종닭이 거래되는 **전통시장 가금판매소**의 **일제 휴업·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**한다.

*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생 빈도도 多

3 방역 관리체계 개선

기 존	개 선
■ **(선제대응)** 농장 발생시 위기경보 '심각', 필요시 방역 특별조치 행정명령 발령	■ **(선제대응)** 야생조류 검출시 '심각', 특별 조치 행정명령 10월부터 즉시 시행
■ **(조기발견)** 감염개체 발견을 위한 간이검사 및 필요시 일제검사	■ **(조기발견)** 정밀검사 체계로 일원화, 검사주기 단축 및 계획된 일제검사 실시
■ **(살처분)**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살처분	■ **(살처분)** 2주마다 위험도 평가 및 조정

□ **(선제대응)**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, **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**한다.

○ 지난겨울 **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**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,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, 분뇨 이동제한 등 **행정명령**(10개)**을 10월부터 즉시 시행**한다.

□ **(조기발견)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**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**정밀검사로 전환**하고, **검사주기도 단축**한다.

* 발생 전 / 후: (육용오리) 사육기간 중 2회 / 3회, (육용오리 이외) 월 1회 / 2주 1회

□ **(살처분 범위)**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, **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**하여 **살처분 범위를 설정·운용**한다.

○ **'500m 내 전축종, 500m~3km 동일축종'**(육계 제외)**을 기본**으로 하되, **2주단위 평가***를 거쳐 **필요시 조정**할 계획이며, 10.1일부터 **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'500m 내 전축종'만 적용한다.**

*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 가능

4. 구제역(FMD) 방역대책

□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.

기 존	개 선
■ **(일제접종)** 평시 연 2회 접종(4·10월)	■ **(일제접종)** 위험지역 조기 일제접종(9월~)
■ **(백신비축)** 평시 약 2개월분 유지	■ **(백신비축)** 재고물량 확대(약3~4개월분)
■ **(점검·보완)** 취약농장 방역실태 점검,	■ **(점검·보완)** 취약농장 방역실태 점검, 권역별 분뇨이동제한 및 실습 중심 교육

1 구제역 백신 접종 및 항체검사

□ **(백신접종)** 전국 **소·염소**를 대상으로 10월부터 **일제접종**을 실시하고, **돼지**는 접경지역 등 **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**을 실시 중이다.

□ **(항체검사·백신관리)** 농가의 **백신 접종여부 확인**을 위해 **접종 1개월 후**부터 **전국 소·염소**에 대한 백신 **항체검사를 실시**하고,

○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**백신 비축량을 확대**(평소 2개월분 → 3~4개월분, 1,200~1,600만두분)하여 관리한다.

2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 관리

□ **(취약농가) 백신 접종 미흡농장**,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**돼지 위탁·임대농장*** 등 **취약농가**에 대해서는 **방역실태를 점검**한다.

○ 최근 구제역 **감염항체**(NSP)**가 검출된 시군**(홍성·강화 등 5개 시·군)과 **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**을 대상으로 **현장점검 및 항체검사**를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축종별 **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·군**에 대해서는 **백신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**한다.

□ **(분뇨관리)**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**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**('21.11~'22.2) **소·돼지 생분뇨**의 권역별 **이동제한**을 실시한다.

○ 전국을 **9개 권역***(시도 단위)**으로 설정**하고,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**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****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.

* 경기(인천), 강원, 경북(대구), 경남(부산·울산), 충북, 충남(대전·세종), 전북, 전남(광주), 제주

**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(승인서 발급)

□ **(교육)**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**비대면 온라인 교육**(유튜브 활용)*을 **확대**한다.

* [1]백신관리, [2]백신접종, [3]소독제 보관·관리, [4]소농장 차단방역, [5]돼지농장 차단방역

5. 당부사항

□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"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, 고병원성 AI, 구제역 등 **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**되는 **엄중한 상황**"이라고 설명하면서,

○ "**축산농가**들은 **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**하고, 농장 및 축사 소독·손 세척·장화 갈아신기 등 **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**해 달라"고 당부하였으며,

○ 아울러, "가축전염병 **의심사례*** **확인 즉시** 가축방역기관에 **신고**해 줄 것"을 강조하였다.

* (구제역) 거품섞인 침흘림, 콧구멍 주변의 궤양,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

* (조류인플루엔자)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, 사료섭취 급감 등

* (아프리카돼지열병) 고열 및 식욕부진, 혈변, 피부 점상출혈, 청색증, 폐사 등

※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: (국번없이) ☎ 1588 - 9060 / 4060